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928
----------	-------

제출년월일 : 2025. 11.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1. 제안이유

- 상위법령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제정) 2024. 3. 26. (시행) 2026. 3. 27
- 지자체 위임 사항을 적용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돌봄사업 추진을
위해 전부개정을 추진

2. 주요내용

- 가. 제명을 안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사업의
목적은 직관적으로 표시하고자 함(제명)
- 나.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구를 명시함(안 제1조)
- 다. “통합지원”“통합지원 관련기관”“통합지원 대상자”의 용어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 대상 및 사업 추진 기관을 명확히 정의함
(안 제2조)
- 라.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시 연관 사업의 법령 및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내용을 구체화함(안 제5조)
- 마.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사무의 위탁 여부 및 통합지원 돌봄 사업을
구체화하여 업무와 책임을 명확히 명시함(안 제6조, 제7조, 제8조)
- 바. 통합지원대상자의 지원 계획의 범위, 제공 주체, 조사 방법 등을 명시하고
그 계획에 따라 각종 돌봄서비스를 직접 혹은 연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9조, 안 제10조)
- 사.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통합지원대상자의 지원 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통합지원대상자의 결정에 전문성을 부여하고자 함(안 제11조)

- 아. 통합지원 창구 설치 규정을 신설하여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 확보를 도모하도록 함(안 제12조)
- 자. 조직적 업무 수행을 위한 본청에 조직구성 및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돌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3조)
- 차.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내용을 명확히 명시하여 협의체의 실질적 운영을 도모하도록 함(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 카.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사전 조사 및 판정 사무의 일부를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 타.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협력 기관과의 협약 체결 등을 명시하여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도록 함(안 제19조)

3. 참고사항

- 가. 전부개정조례안 : 【붙임 1】
- 나.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2】
- 다.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3】
- 마. 입법예고결과 : 【붙임 4】

○ 입법예고기간 : 2025. 9. 3. ~ 2025. 9. 23. (20일간)

바. 기타 참고사항

- 1) 현행조례 : 【붙임 5】
- 2) 방침결정문 : 【붙임 6】

[붙임1]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법인·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3. “통합지원 대상자”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다. 그 밖에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안산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자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법」의 지역사회보장 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시행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매년 통합지원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역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간호·약물관리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 사업

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
4. 퇴원자·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건강관리 지원사업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
6. 케어안심주택 등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통합돌봄 기관 등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의 통합돌봄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개인별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전항의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시장은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시장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통합지원회의)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제2조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안산시 지역 업무 담당자 및 시장이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등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제12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시장은 동 또는 보건소 등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시장은 본청 내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통합지원 담당 조직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 법 제21조의 업무 및 시장이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전담 조직과 사무분장 등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4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통합지원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시의회 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제13조에 따른 통합지원 담당조직의 과장으로 한다.

제16조(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 및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7조(돌봄의 사전 조사 등 사무의 위탁)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른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사전 조사 및 판정 사무의 일부를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우리 지역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및 관련 기관·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에 대한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의 통합지원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0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돌봄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국		복지국
입	통합돌봄과장	정 소 우
안	지역통합돌봄팀	김 경 철
자	담 당 자 (연락처)	구 미 경 (369-1537)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9-928
----------	-------

제안년월일 : 2025년 12월 3일
제안자 : 문화복지위원장

□ 수정이유

- 안 제2조(정의)에 부합하게 “통합지원” 관련 용어를 통일하고 약칭(“전담조직”)을 사용하여 조문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규정함. 또한, 조례 제명을 개정하는 경우 현행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 등이 새로운 제명의 조례에 따른 조치로 연결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행 조례에 따른 행위 및 조치 등을 개정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볼 수 있도록 부칙에 “일반적 경과조치”를 신설함.

□ 주요골자

- 제목 “(통합돌봄 기관 등 지원)”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합돌봄”을 “통합지원”으로 함.(안 제8조)
- 제1항 중 “조직”을 “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합지원 담당 조직”을 “전담조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담 조직”을 “전담조직”으로 함.(안 제13조)
- 제6항 중 “통합지원 담당조직”을 “전담조직”으로 함.(안 제15조)
- 제1항제1호 중 “기관·참여”를 “기관 참여”로 함.(안 제18조)

- “통합돌봄” 을 “통합지원” 으로 함.(안 제20조)
-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를 제1조로 하고, 부칙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신설함.(안 부칙)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의 제목 “(통합돌봄 기관 등 지원)” 을 “(지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합돌봄” 을 “통합지원” 으로 한다.

안 제13조제1항 중 “조직” 을 “조직(이하 “전담조직” 이라 한다)”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합지원 담당 조직” 을 “전담조직”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담 조직” 을 “전담조직” 으로 한다.

안 제15조제6항 중 “통합지원 담당조직” 을 “전담조직” 으로 한다.

안 제18조제1항제1호 중 “기관·참여” 를 “기관 참여” 로 한다.

안 제20조 중 “통합돌봄” 을 “통합지원” 으로 한다.

안 부칙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를 제1조로 하고,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협의체 구성, 지원대상자 선정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p>제8조(통합돌봄 기관 등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의 <u>통합돌봄</u>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13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시장은 본청 내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u>조직</u>을 둘 수 있다.</p> <p>② <u>통합지원 담당 조직</u>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 법 제21조의 업무 및 시장이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p> <p>③ <u>전담 조직</u>과 사무분장 등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p> <p>제15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 ⑤ (생략)</p> <p>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제13조에 따른 <u>통합지원 담당조직</u>의 과장으로 한다.</p>	<p>제8조(지원) ① ----- ----- <u>통합지원</u> ----- ----- -----.</p> <p>② (개정안과 같음)</p> <p>제13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 ----- <u>조직(이하 “전담 조직” 이라 한다)</u>----- -----.</p> <p>② <u>전담조직</u>----- ----- ----- ----- -----.</p> <p>③ <u>전담조직</u>----- ----- -----.</p> <p>제15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 ⑤ (개정안과 같음)</p> <p>⑥ ----- ----- ----- <u>전담조직</u> ----- -----.</p>

제1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우리 지역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및 관련 기관·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 4. (생략)
- ②·③ (생략)

제20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돌봄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신설>

제18조(교육 및 홍보) ① -----

-----.

1. ----- 기관 참여-----

2. ~ 4. (개정안과 같음)
- ②·③ (개정안과 같음)

제20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지원 -----

-----.

부칙

<삭제>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협업체 구성, 지원대상자 선정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
로 본다.